

**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6-46호**

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평가 관련 성과보고 작성방법과 세부 평가기준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01월 23일

국토교통부장관

**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 방법 및 평가기준 고시**

**1. 목적**

- 기지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내실있는 시범운행지구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 마련

**2. 시범운행지구 운영 평가 관련 성과보고 방법 및 세부 평가기준**

- 붙임 자료에 따름

#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 방법 및 평가기준

## 1. 근거 및 목적

### □ 근거

-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7조제4항
-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4조제5항

### □ 목적

-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시·도지사)가 운영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성과보고 방법 및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

## 2. 용어의 정의

### 가. 평가업무대행기관(이하 "대행기관"이라 한다)

-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평가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
  - 한국교통연구원, 한국교통안전공단

### 나. 평가대상 시·도지사

- 평가대상 연도에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한 시·도지사
- 다만, 평가대상 연도의 하반기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의 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

### 다.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평가단(이하 "평가단"이라 한다)

- 평가를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 대행기관의 장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전담조직

### 3. 성과보고 방법 및 작성내용

#### 가. 성과보고 방법

-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시스템(누리집)에 접속하여 나목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입력·제출해야함
  - 성과평가시스템 URL : <https://avzone.koti.re.kr>
- 성과 제출은 지자체별로 부여되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통해 평가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진행할 수 있음
  -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매년 성과제출기한(3월 31일) 내 평가담당자 이메일로 요청\*시 개별 발송되며, 평가대상 시·도당 1개 계정만 발급됨
    - \* 평가담당자 이메일은 성과평가시스템에 사전 공지 예정
    - \* 요청시 신청자의 소속/직급/성명/전화번호/이메일 정보 필수 작성요

#### 나. 성과보고 내용

-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성과보고는 다음 1)부터 5)까지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
  - 1) 시범운행지구 개요
    - 가) 명칭 및 위치·범위
    - 나) 계획서비스 및 운영서비스 개요
  - 2)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달성도
    - 가) 서비스 운영 실적
    - 나)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 실적
    - 다) 제도적·재정적 지원 실적
    - 라) 안전관리 실적
    - 마) 갈등관리 실적
  - 3)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에 따른 효과
  - 4)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·확산 및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에 미치는 효과
    - 가)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·확산 효과
    - 나) 자율주행기술 향상도
    - 다) 참여기관의 종사자수
  - 5) 차년도 운영계획 목표
    - 가) 서비스 운영계획 목표
    - 나) 재정지원계획 목표

- 성과보고는 평가대상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운영성과에 대해 작성함. 다만, 전년도의 하반기에 시범운영지구로 지정받아 처음으로 성과보고하는 경우 지정받은 시기부터 평가대상연도 12월까지의 운영성과에 대해 작성함

#### 4. 성과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

##### 가. 평가기준

- 영 제14조 제5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(평가부문·평가항목·평가지표 및 평가기준)은 [별표 1]과 같음

##### 나. 평가부문·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가중치

- 평가부문·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는 [별표 2]와 같음

##### 다. 평가방법

- 평가는 다음 1)에서 2)까지의 방법으로 실시함

- 1) 평가대상 시·도지사가 작성·제출한 성과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라목에 따라 종합 평가점수를 산출한 후 마목에 따라 종합 평가함
- 2) 평가대상 시·도지사가 제출한 성과 및 증빙자료에 대한 확인·검증이 필요한 경우, 서면질의 혹은 평가대상 시범운영지구를 방문하여 현지실사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

##### 라. 종합 평가점수의 산정

- 종합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들의 평가부문 점수 총합을 평균한 값에서 유상운송사업 운영 등에 따른 가점을 적용하여 산정함. 단, 가점을 포함하더라도 종합 평가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
  - 일부지표의 평가가 제외되어 특정 평가부문의 배점이 줄어드는 경우 「별표2」에서 정한 해당 평가부문의 배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함
  - 산출된 종합 평가점수는 소숫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단위로 산정함
- 평가부문·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점수는 다음 1)에서 3)까지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함

- 1) 평가부문별 점수는 각 평가항목 점수의 합
- 2) 평가항목별 점수는 각 평가지표 점수의 합
- 3) 평가지표별 점수는 평가 기준을 정량화한 값

○ 가점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음

- 1) 1건 이상 유상 여객·화물운송사업 운영시 +5점
- 2) 1건 이상 무인 여객·화물운송사업(국내 기술 활용) 운영시 +5점

#### 마. 종합 평가

○ 라목에서 산출한 종합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함

- 1) A : 종합 평가 점수 90점 이상
- 2) B : 종합 평가 점수 80점 이상
- 3) C : 종합 평가 점수 70점 이상
- 4) D : 종합 평가 점수 60점 이상
- 5) E : 종합 평가 점수 60점 미만
- 6) F : 서비스 미운영(평가 미 실시) ※ '26년 운영성과(' 27년 평가시)부터 도입

#### 바. 평가기간

○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평가기간은 성과보고서를 받은 해의 9월 30일까지로 하며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

#### 5. 평가시 협조

○ 평가대상 시·도지사는 자료제출 등 평가단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

○ 평가단은 다음 1)에서 5)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시·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

- 1)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
- 2) 관련서류의 확인
- 3) 자율주행자동차 및 관련시설에 대한 현지실사평가를 통한 확인

4) 평가의 객관성 및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요구

5)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조치

## 6.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

- 국토교통부는 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평가대상 시·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함
- 국토교통부는 종합 평가 결과가 “A” 인 평가대상 시·도지사에게 대하여 법 제23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
-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시·도지사의 운영성과는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발전과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을 위해 공개할 수 있음
- 종합 평가 결과가 3년 연속 최하 등급인 평가대상 시·도지사(혹은 시범운행지구)는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

[별표1] 평가부문·평가항목·평가지표 및 평가기준

평가 부문	평가 항목	평가 지표	평가 기준
I. 시범운영지구 운영계획 달성도 평가 부문	I-1. 서비스 운영 실적	I-1-1. 서비스 운영기간	○ 서비스 운영기간의 우수성
		I-1-2. 운행거리 실적	○ 운영계획목표 달성의 우수성
		I-1-3. 운행거리당 이용실적	○ 운영계획목표 달성의 우수성
		I-1-4. 차량운영 및 특례 실적	○ 차량 운영현황 자료 제출의 성실성 ○ 유상운송특례 및 안전기준특례 실적의 우수성
	I-2.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 실적	I-2-1. 기반시설 구축 현황	○ 기반시설 구축 실적의 적정성 ※ 기반시설 예시 : 신호개방수(개), 정밀지도 연장(km), 안내표지판(개), 정류장(개), 노면표시(개), 자율차전용주차구획(면), 충전시설(개), V2X 단말기, 관제센터, 기타 시스템 등
		I-2-2. 기반시설 관리 실적	○ 시스템 운영·관리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의 질적우수성 ※ 시스템 예시 : 관제시스템, 서비스 제공시스템(앱), 인프라 연계 시스템(신호현시 및 보행자정보 제공시스템 등) ○ 시스템 외 기반시설 운영·관리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의 질적 우수성
	I-3. 제도적·재정적 지원 실적	I-3-1. 제도적 지원 노력	○ 관련 조례 및 기타 지원 제도 마련, 또는 실효성 향상을 위한 노력/실적의 우수성 ○ 그림자 규제(안전관리자 2인 탑승, 착석의무, 탑승연령 제한 등) 최소화 노력/실적의 우수성
		I-3-2. 재정지원 실적	○ 재정지원 목표 대비 예산 집행 수준의 우수성 ○ 재정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적합성
	I-4. 안전관리 실적	I-4-1. 안전관리 노력	○ 무사고 운행 및 법규 준수 실적의 우수성 ○ 참여기업의 사고 및 법규 준수를 위한 예방 노력의 구체성 및 적정성 ○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실적의 구체성 및 적정성 ○ 안전관리자 배치 및 교육 시행 실적의 구체성 및 적정성 ○ 탑승객 비상상황 교육 시행 여부의 구체성 및 적정성
		I-4-2. 돌발상황 저감 및 개선 노력	○ 긴급제어상황 개선 노력의 구체성 및 적정성 ○ 급감속·급조향 및 운행장애 등 발생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의 질적 우수성 ○ 제어권 전환 및 시스템 고장 발생에 대한 개선 노력의 구체성 및 적정성
	I-5. 갈등관리 실적	I-5-1. 갈등관리 노력	○ 이해관계자(주민, 기존 산업, 관계기관 등)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/실적의 우수성 ○ 갈등 발생시 대응 과정의 적정성

<p>II. 시범운영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에 따른 효과 부문</p>	<p>II-1. 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효과</p>	<p>II-1-1. 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효과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비스의 특성이 반영된 효과 제시 여부</li> <li>○ 효과 분석의 논리성 및 분석 결과의 적정성</li> <li>※ 효과 예시: (교통) 이동성/편의성 향상효과, 대중교통 체계 개선 효과 등, (시설) 자율차 운행환경 개선 효과 등, (기술) 자율차 기술 발전 및 검증 효과 등, (기타) 이용자 수용성 향상 효과, 환경적 개선 효과, 데이터 축적 효과, 비용 절감 효과 등</li> </ul>
<p>III.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·확산 및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미치는 효과 부문</p>	<p>III-1. 자율주행자동차 도입·확산 효과</p>	<p>III-1-1. 자율주행자동차 도입·확산 효과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효과 분석의 논리성 및 분석 결과의 적정성</li> </ul>
	<p>III-2.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 효과</p>	<p>III-2-1. 자율주행기술 향상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계획대비 서비스 및 자율주행 주행거리, 제어권 전환횟수 및 고장 발생수 적정성</li> <li>○ 실효서비스 및 자율주행 비율, 주행거리당 제어권전환 및 고장 발생 적정성</li> </ul>
<p>IV. 차년도 운영계획 목표 평가 부문</p>	<p>IV-1. 서비스 운영계획 목표</p>	<p>IV-1-1. 서비스 운영계획 목표의 적정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월평균 운행거리 목표 설정의 적정성</li> <li>○ 운행거리 당 이용실적 목표 설정의 적정성</li> <li>○ 미운영서비스에 대한 운영계획의 적정성</li> </ul>
	<p>IV-2. 재정지원계획 목표</p>	<p>IV-2-1. 재정지원계획 목표의 적정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재정지원 목표(예산규모)의 적정성</li> <li>○ 재정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적합성</li> </ul>

주) 세부평가기준은 평가단의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[별표2] 평가부문·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

평가 부문	배점	평가 항목	배점	평가 지표	배점
I. 시범운영지구 운영계획 달성도 평가 부문	60	I-1. 서비스 운영 실적	20	I-1-1. 서비스 운영기간	5
				I-1-2. 운행거리 실적	5
				I-1-3. 운행거리 당 이용실적	5
				I-1-4. 차량운영 및 특례 실적	5
		I-2.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 실적	10	I-2-1. 기반시설 구축 현황	4
					I-2-2. 기반시설 관리 노력
		I-3. 제도적·재정적 지원 실적	10	I-3-1. 제도적 지원 노력	5
					I-3-2. 재정지원 실적
		I-4. 안전관리 실적	15	I-4-1 안전관리 노력	10
					I-4-2 돌발상황 저감 및 개선 노력
I-5. 갈등관리 실적	5	I-5-1. 갈등 관리 노력	5		
II. 시범운영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에 따른 효과 부문	10	II-1. 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 효과	10	II-1-1. 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효과	10
III.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·확산 및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미치는 효과 부문	10	III-1. 자율주행자동차 도입·확산 효과	4	III-1-1. 자율주행자동차 도입확산 효과	4
		III-2.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 효과	6	III-2-1. 자율주행기술 향상도	4
				III-2-2. 참여기관 종사자수	2
IV. 차년도 운영계획 목표 평가 부문	20	IV-1. 서비스 운영계획 목표	15	IV-1-1. 서비스 운영계획 목표의 적정성	15
		IV-2. 재정지원계획 목표	5	IV-2-1. 재정지원계획 목표의 적정성	5

주) 평가배점은 평가단의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